



주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청천동) / 전화:032-363-7250 / 팩스:032-363-7588 / 홈페이지:http://gmsamu.or.kr
지회장 : 차준녕 / 담당 : 정재현 정책실장 010-8562-7029

15년을 기다렸다. 대법원은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제대로 판결하라!

- 내일(6.10) 11시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예정(대법원 2호 법정)
- 판결을 더 이상 늦추거나, 파기환송심과 상이한 결론 내려서도 안된다.

사무지회 통상임금 소송은 임금체불 소송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2007년 사측의 개별연봉제 시행에 맞서 1,129명의 사무직 노동자들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통상임금 소송을 2007년 3월 26일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는 그동안 자본이 법정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기본급만 산정해 지급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된 임금 체불 소송이었다. 1심 판결과 항소 등 6년여 세월을 거쳐 2심 판결에서 비로소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이 인용되어 약 80억원 정도의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선언하였으나, 법원은 한국GM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는 단 8억 원의 공탁만을 명한 바 있다. 결국 한국GM은 판결금의 10분의 1 정도의 부담만으로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킨 후 상고를 한 것이다.

파기 환송 심에서도 신의칙 주장이 배척된 원고승소 판결!

이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금항목 일부(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위 판결은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로서 통상임금의 정의,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적용 요건 등이 모두 해명되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한 것이다. 2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하며 다시 한 번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함을 재확인했다.

이렇듯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통상임금 소송은 금액이 가장 큰 업적연봉이 통상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고등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파기 환송 심에서 신의칙에 적용되지 않고 통상임금인 것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연되어 왔다.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노동자 통상임금소송 제대로 판결하라!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그 내려진 결론을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늦추거나 상식에 안 맞는 선고를 한다면 박근혜 정권시절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꼴이 될 것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글로벌 GM의 편을 두는 악수를 두지 않길 바란다. 이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절대 용납하지 않고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법원은 15년을 기다려온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판결을 더 이상 늦추거나 파기환송심과 상이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다.

1. 최초 사건의 재상고심까지의 연혁

- | |
|---|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3. 26 사무지회 조합원 1,129명 통상임금소송 제기 |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7가합24119 판결
-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 조직관리수당, 조사연구수당 등 일부 수당의 통상 임금 성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 |
| ③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
- 쌍방 항소. 업적연봉의 통상 임금 성 인정하여 원고들 항소 대부분 인용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 피고 주장 신의칙 배척. 피고 상고. |
| ④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 업적연봉의 통상 임금 성 확인. 연금보험 등 일부 수당의 통상 임금 성 부정 취지로 파기환송(신의칙에 관하여 언급 없음). |
| ⑤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31393 판결
- 파기 환송 심. 업적연봉의 통상 임금 성 인정, 업적연봉에 관하여 신의칙 적용 불가 확인 취지로 판결. |
| ⑥ 한국GM, 2017. 12. 5. 재상고. |
| ⑦ 대법원 2021. 6. 10. 선고예정 2017다 52712 |

2. 사무지회 통상임금 사건 일람표(2020. 6. 9 기준)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52712 민사3부	서울고등 2016나209599 민사1부	서울고등 2018나10571 제38민사부	대법원 2017다49297 민사3부	서울고등 2017나207297 4 제38민사부
원고 수	총 1,024명	총 798명	총 1,824명	총 384명	628명
판 결 내 용	요지	시간외수당 지급 시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은 위법.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시간외 수당 등과 기지급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신의 칙에 대한 판단	배척	1심 판결은 업적연봉에 대하여 인용	배척	배척
	미지 급 법정 수당 판결 금	(파기심) 6,512,333,848 원	(1심) 3,566,541,525 원 (항소액) 9,074,021,249 원	(1심) 13,703,280,826 원 (2심) 2,033,630,552 원	(1심) 1,426,191,450 원
현재진행 상황	2019. 4. 8.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쌍방 준비서면 제출후 진행사항 없음	쌍방 준비서면 제출후 진행사항 없음	2019. 4. 8.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추정 (관련사건결과 를 보기 위하여)